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COA, COA-RA, COB-RA, IOI-RA, JFA, JGA, JGA-RB, JGA-RC, JHC, JHC-RA
책임 기관: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학생 행동 중재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I. 목적

이 규정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속적 행동 중재에 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배경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하여 요구되는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의 행동 지도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교실의 교사에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중재의 활용은 도전적인 행동을 줄이고 방지해주며 사회적, 정서적 성장과 학업의 증진을 육성해 줍니다. 데이터에 기반하며 트라우마 반응 정보에 따른 행동과 교습, 그리고 적절하고 책임 있는 전략은 학생의 행동을 가이드하여 질서 있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교사는 다양한 종류의 긍정적인 행동조정 전략과 조력을 사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격리 또는 신체적 제지의 필요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만 격리 또는 물리적 제지 조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 A. 지속적으로 긍정적이고 제지가 적은 접근 또는 대체적 접근을 고려하고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거나, 안전하고 긍정적 학습환경의 유지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B. 행동의 우려가 제지의 우려보다 높을 경우
- C. 주 규정에 일관 되는 인도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 D. 주 규정에 일관되며 해칠 의도가 없어야 하고 지나친 불편함을 조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E. 알려진 의료 또는 심리학적 제지와 제한 및 학생의 행동중재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BIP) 또는 개별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에 따라야 합니다.

III. 정의

- A. BIP 는 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줄이거나 해소하고 학생의 적절한 행동과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받은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능적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FBA)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능동적인 구조의 계획입니다.
- B. *커뮤니케이션(Communicate)*이란 정보를 언어 또는 비언어로 전하는 모든 표현을 의미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을 포함 그러나 이에 국한 되지는 않습니다 –
 1. 말하기
 2. 제스처
 3. 표시
 4. 영어 수화
- C. *상담/회의(Conference)*는 교직원, 학부모/후견인과/또는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 D. *연속적인 중재(Continuum of interventions)*는 학생의 행동, 긍정적인 도움으로 시작하는, MCPS 학생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에 따라 일관된 지침을 사용한 전략과 방법적 절차입니다.
- E.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금지된 행위이며 권위자가 의도적으로 물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F. *격리(Exclusion)*는 학생에게 자제력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을 임시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감독하에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학생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도움을 포함한 교습을 받지 않습니다.
- G. *기능적 행동 평가(FBA)*는 문제행동에 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BIP 개발 지침에 관한 정보를 모은 체계적 절차입니다. FBA 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문제 행동이 학생에게 주는 기능/의미의 식별
 2. 교육적 환경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의 설명
 3. 무엇이 행동을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하는 지에 대한 식별과 예측을 위하여 환경적인 요인과 그 밖의 요소와 배경이 미치는 영향과 일정기간 동안 행동의 조절을 위해 적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
- H. *학교 내 격리(In-school Intervention-ISI)*는 일정한 시간 동안 반에서 격리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ISI 동안, 학생은 다음의 기회를 다음과 같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1. 일반 커리큘럼을 적절하게 계속 진행한다.
 2. COMAR 13A.05.01 에서 규정한 대로 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 특수교육 또는 학생의 IEP에서 명시한 대로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다.
 3. 프로그램에 맞는 교습을 일반 수업시간에서 받는다.
 4. 학생의 현재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급우와 함께 참여하고 적절하게 연장한다.
- I. *Joint Commiss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ealth Care Organizations(Joint Commission)*은 승인된 미국의 독립적인 비영리 건강 보건 기관이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관은 일정 행동기준에 맞는 헌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J. *긍정적 행동 중재, 전략과 도움(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strategies, and supports)*은 도전적인 행동의 예방과 감소, 또한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성장의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하고 트라우마 정보에 따르는 대응책과 교습,

도움을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 *보호 또는 안정 기기(Protective or stabilizing device)*는 학생의 기능을 육성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예방 및/또는 개인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붙이거나 조정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나 학생의 신체일부에서의 일반적 접근을 제한하게 하는 기기 또는 물체를 말합니다. 보호 또는 안정성 유지를 위한 기기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제조사의 제작의도대로 기기를 사용할 목적으로의 의료 전문가가 지시한 보조기기
2. 안전벨트 또는
3. 공공기관 이동 계획으로의 이동 시 학생안전을 위한 기타 안전기기

L. 제지(Restraints) – 사용의 승인은 사용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허용됩니다.

1. *기계적 제지(Mechanical restraint)*는 학교가 Joint Commission 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인된 학교일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립 또는 비공립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의 몸의 일부분의 자유로운 움직임 또는 접근을 규제하기 위해 학생이 쉽게 어낼 수 없는 기기 또는 물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계적 제지(Mechanical restraint)에는 훈련받은 학교 교직원이 설치한 보호 또는 안전장치나 또는 적절한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승인하고 특정적이고 승인된 목적에 맞게 학생을 위해 구성된 다음의 기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 a) 조정 기기 또는 기계적 도움(adaptive devices or mechanical supports)은 기기 또는 기계적 도움이 없을 경우보다 움직임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신체위치, 균형, 조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 b) 자동차에서의 안전(vehicle safety restraints)을 위한 제지는 학생이 움직이는 자동차로의 이동 동안 사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c) 의료적으로 필요한 고정/제지

- d) 정형외과적 처방 기기(orthopedically prescribed devices)는 학생이 다칠 위험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물리적 제지(Physical restraint)*는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의 경우에만 승인되며 이는 Maryland 법에 따라 학생의 몸, 팔, 다리 또는 머리를 자유로 움직이는 능력을 줄이거나 고정하도록 하는 Maryland 법에 명시한 개인적 규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제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 a) 안정 또는 편안하기 위해 학생을 가볍게 잡는 것
- b) 신체적 인도(physical escort), 즉 학생이 안전한 장소로까지 걸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만지거나 손, 손목, 팔, 어깨 또는 등을 잡는 것. (예: 신체적 인도는 장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학생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c) 학생이 파괴적으로 움직이며 한 장소를 떠나기 싫어하며 카운슬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후선책
- d) 싸움에 개입하는 경우.
3. *바닥에 엎드리는 프론 제지(Prone restraints)*는 모든 공립과 비공립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학생의 얼굴을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규제를 행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M. 격리(Seclusion)

1. 학생이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는 방 또는 장소에 학생을 혼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CPS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격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¹

¹ Maryland 법은 Department [of Education], 지역 교육구, 청소년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Juvenile Services Education Program), Maryland School for the Deaf, Maryland School for the Blind 로 정의된 Maryland 공립 기관에서의 격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nn Code ED 7-1101(e))

2. "격리(Seclusion)"에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 학생을 분리하는 행동 중재 계획(때때로 "타임아웃"이라고도 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a) 학생이 나갈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없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 또는
 - b) 학생이 떠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교실 내 별도의 장소.

N. 정학(*Suspension*)은 징계 사유로 인해 특정기간 동안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는 MCPS Regulation JGA-RB, 정학 및 퇴학(*Suspension and Expulsion*), 및 Regulation JGA-RC, 장애 학생 정학 및 퇴학(*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O. 트라우마 감지에 따른 조정(*Trauma-informed intervention*)은 학생의 신체와 정서적 건강 및 교육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폭력, 학대, 방치, 재해, 테러리즘, 전쟁이 포함한 트라우마를 알거나 감지하여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입니다.

P. 업무일(*Workday*)은 토요일, 일요일, 법적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MCPS 행정사무실이 업무를 하는 날입니다.

IV. 행정절차

- A. 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교의 성공을 위해 불가결한 것입니다. 긍정적이며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교육 환경의 기초에는 모든 학생의 충족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높은 학업과 행동 기준이 책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 B. 교직원은 효과적 교실 운영 방법을 온전히 적용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성취를 돕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합니다.
- C. 교육위원회 Policy JGA, 행동 중재, 안전 및 웰빙 계획(*Behavior Intervention, Safety, and Well-being Plan*)에 따라 학생 행동 중재 전략은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학생을 정규 학교 프로그램 내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직원은 갈등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고 모든 학생의 다양한 행동 요구를 충족하며 행동중재정책 및 관행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지식 및 기술을 갖춥니다.

- D. 교육위원회 Policy COA, *학생의 안녕과 학교 안전(Student Well-being and School Safety)*, 각 교장은 학교에 협력적 문제 해결, 근본 원인 분석, 정신 건강 지원, 출석 및 참여뿐만 아니라 긴장 완화 및 신체적 개입 예방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 E. *MCPS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학생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학업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장/대리인,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생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 또는 기타 전문가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교사는 학교장/대리인에게 이를 알리고 학교장/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주선합니다.
- F. 격리 또는 제지 조치를 사용하기 전, 학교 교직원은 일련의 긍정적 행동 개입교육, 방법 및 지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개입교육은 존엄성을 유지하고 학대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학생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려하며 제공해야 합니다.
- G. 본 규정 및 Maryland 법에 따라 구속을 사용하도록 지정되고 교육을 받은 MCPS 직원만이 행동 건강 중재로 구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제지는 학생이나 다른 개인을 임박한 심각한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행동 건강 개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덜 침해적인 비물리적 개입이 실패하였거나 학생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2. 어떤 경우에도 MCPS 교직원은 비순응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태도에 신체적 제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Maryland 법 및 MCPS 규정 COB-RA, *사고 보고(Incident Reporting)*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MCPS 직원은 폭력의 수준을 낮추거나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V. 격리(EXCLUSION)

- A. 학교 교직원은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 격리조치를 사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다룰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학습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
 2. 학생의 행동이, 비상상황으로 간주되고, 적은 관여, 비물리적 조치가 실패 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다른 학생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학생이 격리되기를 요청하거나,
 4. 학생의 행동조정계획(BIP)에 격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 B. 장애의 심각성 또는 학생의 능력(인지, 사회 정서 및/또는 신체)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영향을 미칠 기타 이유로 학생을 수업, 과외 활동, 점심 또는 휴식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격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 장애가 있는 학생이 수업 및 기타 프로그래밍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학교 팀은 다른 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을 포함시키기 위해 어떤 새로운 서비스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IEP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 D. 격리를 위한 환경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학생을 항상 볼 수 있는 환경을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
 2. 충분한 불빛, 환기, 비품을 제공
 3. 출구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잠기지 않은 장애물이 없는 곳
- E. 학교 교직원은 격리를 적용한 학생을 모니터하고 학생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격리의 결과를 부른 행동을 설명;
 2. 학습환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지도와 지시
- F. 학교 교직원은 격리 기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1. 학생의 발달도와 행동의 심각성에 맞는 조치인지

2. 30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G. 학생의 행동이 심각하게 수업 진행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에게 해가 될 경우, 반 교사는 임시적으로 학생을 반에서 격리하여 학교장/대리인에게 학생을 보내서 학교 내 격리(ISI), 학교내 정학(ISS), 정학 또는 대체 교습 등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훈육을 받도록 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관리자/지명자와 상담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해당 수업에 재입학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이 다시 교실에 돌아오기 전에 해결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만약, 반 교사와 의논을 한 후, 학교장/대리인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한 해결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대리인과 교사 그리고 해당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를 가능한 한 즉시 주관해야 합니다.
 2. 이 회의를 통해 상호 간에 만족할 만한 단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 교사와 상담 후, 학부모/후견인,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OSSWB) 또는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의 담당 부교육감/대리인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합니다.
 3. 학교장/대리인은 교사와 상의 후, 학생이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언제 교실에 복귀할지를 결정합니다.
- H. 학부모/후견인/보호자와 교직원 격리 사용을 다루고 다음을 위해 언제든지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FBA 적용과
 2. 학생의 BIP 를 개발, 검토 또는 갱신
- I. 학교 교직원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
1. 비장애 학생이 과도한 격리(예: 1 회에 5 분 이상의 주 5 회 이상의 격리)를 받을 경우, 학생이 Maryland 법에 따라 특수교육 또는 관련서비스의 검토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지 판단을 할 Educational Management Team(EMT) 또는 IEP 팀으로의 추천이 필요를 고려합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이 배치를 바꿀 정도의 과도한 격리를 받게 될 경우, Maryland 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확실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J. 과도한 격리는 또한, 학생 정보 시스템의 온라인 학생 추천 모듈을 사용하여 기록을 해야 합니다.

VI. 제지(RESTRAINT)

A. 신체적 제지의 사용(use of physical restraint)은 학생의 행동이 비상상황으로 간주되거나, 관여가 적은 조치, 비물리적 조치가 실패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다른 학생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을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MCPS 에서 금지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의 BIP 또는 IEP 에 물리적 제지를 서면으로 승인했거나 거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1. 제지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위험이 없어지는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2. 신체적 제지를 사용했거나 교직원이 Maryland 법에 규정된 대로 신체적 제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학생별로 결정한 경우,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BIP 또는 IEP 에 신체적 제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학교 학생 담당 직원이 –

a)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신체적 제지가 학생의 의료기록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지, 필요한 경우, 의료,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합니다.

b) 학생의 비상상황에서 신체적 제지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학생의 태도에 대한 대응으로 더 약한 관여, 비신체적 관여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c) Maryland 법에 따라 학부모/후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B. 신체 제지(physical restraint)의 적용

1. 신체 제지는 지정된 신체 제지 사용 훈련을 받은 학교 담당자만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제지는 해당 학생, 타 학생, 교사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적절한 적용인지를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눈으로 모니터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3. 학교 교직원이 신체적 제지를 할 때에는 학생이나 다른 개인의 즉각적이고 심각한 물리적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우에만 적절한 힘을 사용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4. 신체 제지 –
 - a) 학생이 차분해지면 바로 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b)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5. 신체적 제지 적용에서, 학교 교직원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a) 학생을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정하는 엎드린 자세 고정 장치의 사용;
 - b) 학생의 얼굴을 바닥을 향하도록 하거나 다른 자세를 취하여 학생의 숨쉬는 기도를 막거나 학생의 숨쉬는 능력을 해하는 것으로 학생의 얼굴이 교직원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학생의 머리, 목, 상반신에 힘을 가하는 것; 또는
 - c) 학생의 몸통을 가로지르는 것.
 2. 제지 후 –
 - a) 학생이 제지의 결과로 신체적 상해 또는 고통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담당 직원이 검사합니다.
 - b) 모든 우려점과 문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 c) BIP 또는 IEP 에 제지가 기되어 있지 않는 한 24 시간 이내에 학생의 부모님/후견인/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C. 기계를 사용한 제지는 학교가 승인되고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MCPS 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인증된 학교에서는 모든 절차가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VII. 격리(SECLUSION)

Maryland 공립기관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Maryland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A. 격리는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section 7-1102.에 따라 비공립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B. MCPS 에서 MCPS 학생을 비공립학교로 배치할 경우, MCPS 는 해당 학생의 격리 사용을 조사 및/또는 모니터링하기 위한 Maryland 요건을 준수합니다.

VIII. 제지와 격리 기록(DOCUMENTATION OF RESTRAINT AND SECLUSION)

A. 보고 요건

1. 학생이 한 학사연도에 10 회 이상 신체 제지되는 경우, 등록된 학교는 특수교육 서비스 책임자/지명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가능한 한 빨리 MSDE 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2. MCPS 가 비공립학교에 배치된 학생이 한 학사연도에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 배치를 10 회 이상 받은 경우, 비공립학교는 MSDE 와 MCPS 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합니다.
3. 특수교육 서비스 디렉터/대리인은 학생이 공립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10 회에 걸쳐 격리 또는 격리되는 것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a) 비공립학교에 의한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의 각 사건의 상황을 포함하여 학생의 사례를 검토;
 - b) 덜 제한적인 행동건강 중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공립학교 또는 비공립 학교의 행동 건강 중재 패턴을 평가; 그리고

- c) 제지의 경우 등록 학교 또는 제지와/또는 격리의 경우 비공립학교와 MSDE 에 MCPS 의 권장사항을 공유합니다.

B. 학생 기록에의 제지 사용 기록

1. 학생을 제지할 경우, 학교 교직원은 온라인의 해당 모듈에 보고와 기록을 해야 합니다.
 - a) 이외의 관여가 적은 조치가 실패 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 b) 제지를 하게 만든 행동의 직전에 발생한 사건
 - c) 제지를 촉발한 행동
 - d)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야 하는 행동을 관찰한 학교 교직원 이름
 - e) 제지를 하고 이를 모니터한 학교 교직원 이름과 서명
2. 기록은 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제지의 형태,
 - b) 제지 시간의 길이
 - c) 제지 시, 학생의 행동과 반응
 - d) 제지 사용을 알린 행정담당자의 이름과 서명

C. 이 항목에 명시한 기록은 학생의 교육적 기록에 보관해야 하며 Maryland 법과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에 따라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D. 제지를 사용할 때마다 학부모/후견인에게 학생의 BIP 또는 IEP 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24 시간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E. 해당 학생을 위한 제지 사용에의 치료상의 금기를 명시하는 의료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을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교직원이 개인 의료 전문가에게 금기사항을 의논할 수 있도록 양도양식에 서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지의 대체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IX. 제지 후의 추천

- A. 만약 제지가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또는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하의 장애학생이 아닌 학생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생은 즉시 EMT, 학교 Section 504 팀, IEP 팀 중 적절한 팀에 인도하게 됩니다. 회의는 근본적인 원인과 제지를 사용하게 만든 바로 직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토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위해 만약 학생의 IEP 또는 BIP 에 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교는 IEP 회의를 고려하는 상황이 있는지 10 일 업무일 이내에 만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1. FBA 의 필요
 2.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절한 행동 조정
 3. BIP 의 적용
 4. 회의에는 위험한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유 또는 목적에 관한 토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학부모/후견인의 서면 동의에는 위의 section XIII.F 에서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의 IEP 또는 BIP 에 신체 제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C.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위해 만약 학생의 IEP 또는 BIP 에 학부모/후견인/보호자의 승인과 함께 제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생의 IEP 또는 BIP 는 Maryland 법에 따라 IEP 또는 BIP 에 얼마나 자주 IEP 팀이 만나 적절하게 검토, 갱신을 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IEP 팀이 학생의 IEP 또는 BIP 검토 또는 갱신을 위해 만날 경우, 절차는 연방, 주정부 특수교육법에 따르며 IEP 팀을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제지의 사용을 금해야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료적 기록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포함한 기존의 건강, 신체, 정신/심리, 사회심리적 정보
 2. 학부모/후견인이 제공한 정보
 3.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관찰

4. 학생의 현재 배치
 5. IEP 팀이 지난번에 만난 후, 제지의 빈도와 기간
- D. MCPS 는 Maryland 법에 따라 IEP 팀이 제지의 사용을 학생의 IEP 또는 BIP 에 포함할지를 승인 또는 거부를 제안하는 앞으로 있을 IEP 회의 안내를 학부모/후견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E. 학부모/후견인/보호자 동의서
1. IEP 팀이 학생의 행동 관리를 위해 IEP 또는 BIP 에 제지를 포함하도록 제안할 경우, 학부모/후견인/보호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만약 학부모/후견인이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IEP 팀은 학부모/후견인에게 IEP 팀 회의 5 업무일 이내에 다음을 명시한 서면 안내를 보내야 합니다. -
 - a) 학부모/후견인은 제지 사용을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 b) 만약 학부모/후견인이 IEP 팀 회의 15 업무일 이내에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IEP 팀은 제안한 제지의 사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학부모/후견인, 보호자가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IEP 팀은 학부모/후견인, 보호자에게 IEP 팀 회의 업무일 이내에 다음을 명시한 서면 안내를 보내야 합니다. -

X. 예외 상황과 금지된 행동(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PROHIBITED ACTIONS)

- A. 만약 행동반응이 학생의 위협(예: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를 표현한 경우)에 관한 것일 경우, 교직원은 MCPS Regulation COA-RA, *Behavior Threat Assessment* 에 따라 행동 위험 평가 절차(behavioral risk assessment process)를 따릅니다.
- B. 보호 또는 안정 기기(Protective or stabilizing) 사용은 기능적 능력, 자학적 행동 방 및/또는 개인의 안전위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직원은 보호 또는 안전 기기를 의료 전문가 지시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IEP 또는 BIP 에 따라 사용해만 합니다.

- C. 학교는 행동을 제어하거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마약이나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 전문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D. 제지를 벌칙으로 사용하거나 훈육방법 및 강요, 양갈음 또는 편의를 위하여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E. MCPS 는 어떠한 경우에서의 체벌도 금지합니다.

XI.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 A. MCPS 는 학교가 지정한 학교 교직원에게 이 규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전문적 훈련을 제공합니다.
 - 1. 트레이닝을 받은 학교 교직원은 매해 마다 보충 코스를 재수강해야 합니다.
 - 2. 각 학교는 최소 5 명 이상의 비상팀원을 비상상황에 신체적 제지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B. 이 트레이닝에는 서면 평가와/또는 명시한 기술과 능력에서의 신체기능력과 함께 다음이 포함됩니다. -
 - 1.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알고 진정시키는 방법을 포함한 단계적 축소와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 및 지원
 - 2. 트라우마 감지에 따른 조정
 - 3. FBA 와 BIP 계획과 절차
 - 4. 격리
 - 5. 자제 또는 자제의 대체방법
 - 6. 모든 Maryland 공립학교에서의 격리 금지
 - 7. 신체적 고통이나 위치에 따른 질식 증세

8. 응급조치와 심폐기능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9. 개별화한 행동 조정은 장애, 의료 기록, 과거의 트라우마를 포함한 학생의 특징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10. 자신을 해치는 행위 예방

XII. 학생과 학부모에의 통보/알림

- A. 이 규정을 알리는 방법은 매해 지정된 출판물을 통해 공표하며 MCPS 학교에 배부합니다.
- B. 학부모/후견인, 보호자와 교직원은 다음에 따라 언제든지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까지 -
 1. FBA 를 시행
 2. 학생의 BIP 를 개발, 검토 또는 갱신 및/또는
 3. 학생에 대해 상담 (적절한 경우)

XIII. 적용, 모니터와 검토

- A. 학교장은 다음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절차 적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1. 매 학사연도 초에 교직원으로 구성된 5 명의 지정된 비상팀 팀원은 이 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돕기 위한 교육구 자료담당으로서 전문성 개발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학교장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학생의 하나 이상의 반에서의 격리는 정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니다.
 3. 교직원에게, 권한을 갖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는 신체적 벌, 체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 a) 금지되어 있으며;

- b) MCPS Regulation JHC-RA,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 c) 직원 징계처분 사유임
4. 학교 교직원에게 격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 a) 금지되어 있으며;
 - b) MCPS Regulation JHC-RA,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 c) 직원 징계처분 사유임
5. MCPS 교직원이 체벌 또는 본 규정에 어긋나는 기타 행동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chief of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OSSWB 의 적절한 associate superintendent 에게 즉시 이를 보고합니다.
6. 신체 제지가 이루어졌을 경우, 학교일이 마치기 전 그리고 24 시간 이내에 학부모/후견인에게 이를 알립니다.
7. 각 제지 건의 기록은 교육적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8. 각 제지 상황의 기록은 지정된 온라인 모듈에 기록합니다.
9. 격리와 제지에 관한 불만을 받거나 조사는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Department of Compliance 와 Investigation and the Office of Special Education (OSE)에 상의를 합니다.
10. 교직원에게 훈련받을 직원만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B. MCPS 는 이 규정과 Maryland 법에 따라 제지 사용을 모니터합니다.
- C. 제지 또는 격리(또는 IEP 에 따라 학생이 배치된 비공립 학교에서의 격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같은 반에서 여러 번 사용되거나 또는 같은 개인에게 계속 사용될 경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고 적절한 경우, 현재 사용하는 행동 방법을 검토합니다.
- D. 이 규정은 Maryland 법에 따라 매해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 U.S.C., §1400, et seq.;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ADAAA);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straint and Seclusion Resource Document* (2012); U.S. Department of Education, *Dear Colleague Letter: Restraint and Se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Dec. 28, 20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Fact Sheet: Restraint and Se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Dec. 2016);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 7-307, 7-1101, 7-1104, and 7-1106 and 8-405; 2022 Maryland Laws Ch. 31 (H.B. 1255);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08.01.11, 13A.08.01.17, and 13A.08.04.02-.06;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 Guidance, COMAR 13A.08.04–*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July 22, 2019); MSDE Technical Assistance Bulletin 19-02,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Physical Restraint and Seclusion Supplement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July 2019);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in MCPS*

규정 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550-1, August 10, 1976년 8월 10일(디렉터리의 정보 갱신), 1986년 10월 갱신; 2004년 9월 10일 갱신; 2012년 3월 13일 갱신; 2017년 10월 4일 갱신; 2019년 10월 8일 갱신, 2024년 1월 26일 갱신.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기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